

보도시점 2025. 6. 4.(수) 11:00  
6. 5.(목) 조간 배포 2025. 6. 4.(수) 09:00

##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 동물생산업장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 등록 의무화
- 동물학대 방지, 영업장 관리 등을 위한 CCTV 설치 의무 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 등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2025년 6월 2일 공포·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등록 대상\*에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가 추가된다. 해당 규정이 시행되는 2026년 6월 3일부터 동물생산업자는 시·군·구에 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생산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길러지는 부모견 현황을 파악하고, 반려동물 생산부터 판매, 양육 등 전 생애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 (현행)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  
(개정)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장에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 추가

둘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대상 영업장\*이 반려동물 영업 일부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동물판매업(일반 펫숍),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영업장도 동물이 있는 주요 장소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반려동물 영업자는 CCTV 설치를 통해 영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의 안전사고 및 동물학대 등을 예방·점검할 수 있게 된다.

\* (현행) 동물판매업(경매),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동물장묘업 →  
(개정) 동물판매업(일반 펫숍),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추가

다만, 영세한 기존 영업자에게는 CCTV 설치가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준비 기간을 두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도록 하였다.

\* 영업장 면적 300㎡ 이상: 2025.12.31.일까지 / 300㎡ 미만: 2026.12.31일까지

그 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동물실험의 기준 및 절차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단체를 명시하고, 동물등록번호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무선식별장치를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에도 변경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 신고 사유를 보완하였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반려동물 영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어 영업장 내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된 제도들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영업자, 지자체, 관련 단체 등에서도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붙임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담당 부서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동물복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연숙 (044-201-2611)
		담당자	사무관	박진희 (044-201-2620)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책임자	팀 장	홍기옥 (044-201-2651)
		담당자	연구관	김희진 (044-201-2661)

구 분	현 행	개 정 안
<p><b>등록대상동물의 범위</b> (시행령 제4조)</p>	<p>▶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월령 2개월 이상)</p>	<p>▶ <b>'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개'</b> 추가 (월령 12개월 이상)</p>
<p><b>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b> (시행령 제5조)</p>	<p>▶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가목부터 바목에 따른 연구개발 기관</p>	<p>▶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 개발기관 * 회사, 비영리법인 등 추가</p>
<p><b>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b> (시행령 제10조제1항)</p>	<p>▶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 등록</p>	<p>▶ <b>동물생산업자의 경우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b>부터 30일 이내에 동물 등록</p>
<p><b>동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유</b> (시행령 제11조제1항)</p>	<p>▶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변경 신고</p>	<p>▶ 무선식별장치의 <b>고장 및 분실 등으로 무선식별장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b> 변경 신고 * 무선식별장치를 외장형→내장형으로 바꾸는 경우에도 변경 신고</p>
<p><b>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상 및 장소</b> (시행령 별표3)</p>	<p>▶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 보호시설,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 * 동물판매업(경매), 장묘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p>	<p>▶ <b>모든 반려동물 영업장*, 동물복지 도축장</b> 추가 * 동물판매업(펫숍), 생산업, 수입업, 전시업 추가 ** (경과조치) 영업장 300㎡ 이상: '25.12.31일까지 / 300㎡ 미만: '26.12.31일까지</p>